

여성신학연구소 규정

1993. 1. 12. 제정

2016. 6. 16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 6.16.>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여성신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신학에 관한 연구
2. 여성신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·정리·발간
3. 여교역자 및 평신도의 신학 교육
4. 학술회의 및 세미나의 개최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소장·부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③ 소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제5조(조직) ① 연구소에 연구부, 교육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 연구부는 여성신학의 연구 및 여성신학 자료의 수집·정리·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교육부는 학술회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행정실은 서무 회계, 출판물의 관리 및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6조(부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.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 6.16.>

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연구위원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여성신학연구소 규정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9조(직원) 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직원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하되,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신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기독교학과 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1.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 <신설 2012.12.31.>

제12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6.6.16.>

부칙 <1993. 1. 12. 제정>

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4. 2. 전문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31. 개정>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6. 16. 개정>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